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8-95
----------	------

제출년월일 : 2019. 1. .

제출자 : 안산시장

제정이유

- 교육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필요.
⇒ 2019년 경기도 전역에서 예정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시 단독으로 진행 계획 중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필요.
- 교복지원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 (안 제3조 ~ 제4조)
- 지원 금액 및 절차 (안 제5조 ~ 제6조)
- 환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조례제정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2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사전예고(결과) : 붙임3

- 입법예고 : 2018. 11. 27. ~ 2018. 12. 17.(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7건(반영 : 3건, 미반영 : 4건)

기타 참고사항 : 붙임4

- 조례 제정 방침 계획 결정문
- 비용추계서

<붙임 1>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통한 교육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교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구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른 교복 구입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매년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기준일 이후 관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년 1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교복의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업무 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그 입학연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학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교육청소년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박 양 복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임 준 홍
	담당자 성명·전화	박 해 연 (행정 3452)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95호
----------	--------

제안년월일 : 2019. 1. 24.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법제처의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따른 제정안 수정으로, 불분명하여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용어 정의 및 관련 법 조항 명확화.(안 제2조)
- 일반적인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 을 수정함.(안 제4조)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 및 확인 절차 구체화.(안 제6조)
- 교복구입비 지급 조항 신설(안 제7조)
- 부칙 중 적용례를 2019학년도 입학생 외 전입하는 학생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안 제4조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를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그 입학연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실이 확인 될 경우”를 “경우”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정안	수정안
<p>③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그 입학년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학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① 시장은 제6조 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 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그 입학연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환수)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p>제8조(환수) (원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정안	수정안
<p><u>제8조(시행규칙) (생 략)</u></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생 략)</p> <p>제2조(<u>적용례</u>) 이 조례는 2019학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p>	<p><u>제9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u></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p> <p>제2조(<u>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u>)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년 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 한다.</p>